

수원지방법원 2023. 4. 11 선고 2020가단5590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박민서, 홍성아, 황휘건, 민윤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천

담당변호사 이은정, 김문수

변 론 종 결 2023. 3. 14.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6,775,5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 6. C과, C이 소유한 수원시 팔달구 소재 아파트의 99/100 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2014. 5. 13.부터 2015. 8. 12.까지 C에게 매매대금 합계 338,131,05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위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C에게 위 338,131,05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

C이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후 2018년까지 모두 변제하여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C으로부터 2019. 1. 3.부터 2021. 3. 4.까지 합계 193,000,000원을 초과변제 받았고, 2020. 3. 10. C의 어머니 소유인 용인시 소재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C을 대신하여 260,715,039원을 배당받았으며,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2020. 8. 2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46,253,323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C으로부터 위 합계 699,968,362원을 부당이득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한 채권 338,131,050원의 범위 내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38,131,050원에서 피고가 상계 항변하는 구상금 채권 191,355,484원을 공제한 146,775,5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증인 C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부합하게 원고와 체결한 매매 약정 및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달리 그에 대해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일응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인정한다.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C의 무자력도 인정된다.

나. C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단

1) 법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2) 구체적인 판단

원고는 C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제공한 급부가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변제의 원인이 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거나, C이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변제를 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점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을 한 바 없다.

원고는 단순히 계좌거래내역을 비교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가 C에게 송금한 돈에 그에 대한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C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더 많다는 사유만으로 2019년 이후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이 없는 채무에 대한 변제를 계속했으며, 2019년 이후 C이 피고에게 한 채무 변제가 모두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 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가 C에게 현금으로 대여한 돈 등 위 계좌내역에 드러나지 않는 피고의 채권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위 계좌내역에 드러나지 않는 피고의

채권이 없다는 점을 원고가 명확히 주장입증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2019년 이후 C이 변제할 당시에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C에게 착오로 변제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가정적 판단

설령 C이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변제한 금액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을제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2021. 7.경 C과 피고 사이에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모두 소멸시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써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이 모두 소멸하였는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가 대위 행사할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